심사대상 : 작업장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재정부

심사위원

성명	서명
양 원 백	
김 동 현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기존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심사 결과 : 종합 4등급

구 분	등 급
종합등급 (1,000점)	**4**
1 **안전역량** (300점)	**3**
2 **안전수준** (450점)	**4**
3 **안전성과** (250점)	**4**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1 안전역량 등급	300	3
	1. 체계 역량	소 계	170	D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D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C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C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D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C
	2. 관리 역량	소 계	130	C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D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C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3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B
안전수준 [450점]		2 안전수준 등급	450	4
	1. 작업장	【작업장 안전관리】	450	D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50	D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50	D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E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D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E
안전성과 [250점]		3 안전성과 등급	250	4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조치사항 이력관리	50	B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80	B
		③ 안전문화 확산	20	B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E

※ 각 지표별 최종 득점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등급 구분표(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등급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 미만
	A	B	C	D	E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등급	A+	A	B+	B	C	D+	D	E+	E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0점

Ⅱ 총평

범주	총 평
안전 역량	기관은 안전 보건 경영이 경영활동의 최우선가치로 안전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역량을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안전관리규정 등의 체계화,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 수준	**【작업장 안전관리】** 기관은 규모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사무실, 방송회관 등 기본적인 건축 구조물 이외에 고위험 설비나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검정대상 보호구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같은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엘리베이터의 구동부에 안전덮개 설치와 같은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안전작업허가제도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LPG 등 고압산소용기가 환기가 불충분한 창고에 전도방지조치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수급업체 평가기준표 활용과 환류활동을 이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부족함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 성과	기관의 안전활동 추진내용, 외부평가기관의 안전평가 결과,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현장검증 결과 미흡한 사항이 일부 발견되어 향후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Ⅲ 범주별 개선사항

○ 안전역량

개선사항
1. 안전경영 노사의 정기적이고 다양한 소통 노력과 아차사고와 안전 신고 등에 대한 기여자 인센티브 등 제도 활성화
2. 안전보건전문인력의 보강과 전문직무제 운영 기본계획에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3. 총괄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최고경영자 지정이 필요
4.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대 및 자격요건 상향이 필요
5. 안전보건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예산의 적정한 집행
6.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한 내용 추가와 지속적인 검토 및 최신화
7. 안전관련 지침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유지.증진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8.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서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활용
9.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
10.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
11.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등에 제도적 개선
12. 위험성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
13. 위험성평가 결과는 공람, 전자게시판 게시 등 공유
14. 시설개선공사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수시평가)와 이행점검 및 환류
15.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은 연중 실시를 목표로 분기 1회 이상 미 실시자 파악 및 실시 독려
16. 건강진단 결과 관리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이상소견자를 포함한 사후관리 실시
17.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에 사내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개정하고 고객응대 보호 안내 조치는 실행이 필요
18. 업무특성 및 구성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과 실효성있는 운영실시
19. 교육 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교육 결과 및 수요도 조사 등의 반영
20. 산업보건분야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강화 노력

개선사항
21. 작업중지 제도 정착을 위한 활성화 노력 22. 비상대피 훈련 시행이 필요 23. 재해조사 매뉴얼의 산업재해에 대한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 보완

○ 안전수준

개선사항
1. 옥상 건널다리에 난간 설치 2. 유틸리티 시설의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모 착용 표지 게시 3. 음료수 병에 물질을 소분하여 보관할 때는 경고표지 부착 4.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MSDS 구비 5. 방독마스크는 개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교체할 수 있는 여분의 정화통 보유 6. 검정대상 보호구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7. 기계.기구.설비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 및 점검 방법에 대한 매뉴얼 등의 제공 8. 엘리베이터의 구동부에 안전덮개 설치 필요 9. 건물 옥상 팬룸의 판넬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안전조치 10. 관류보일러 판넬 전기충전부에 절연 덮개 설치 필요 11. 지하 5층 공조실 오수조 펌프에 접지 필요 12. 점검, 정비, 청소 등의 작업 시 불시전원 투입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시건조치 필요 13. 옥상의 피뢰침 설치부, 냉각탑 상층부, 안테나 설치부, 지하의 물탱크 상부에안전난간 설치 14. 사다리식 통로의 입구에는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설치 15. 보일러 및 스팀헤더의 지시압력계에 정상운전시의 운전 지시값과 최대 및 최소값 표시 16. 신너, 페인트, 경화제 등 유기용제를 지하창고의 캐비넷과 선반에 개방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음으로 실외 별도의 공간에 분리 보관 17. LPG, 고압산소용기가 환기가 불충분한 창고에 전도방지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장소에 보관 18. 소분된 용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19. 관리대상물질 취급장소에 명칭 등의 게시 20. 특별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취급일지의 작성.관리가 필요 21. 현장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립 22. 정화조실, 소화약제실에 밀폐공간 표지부착

개선사항
23.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인 기관이 직접 작업계획 및 작업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허가할 수 있는 조치 필요 24. 안전작업허가제도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25. 작업중지요청제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음의 명시 필요 26.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수급업체 평가기준표 활용과 환류활동을 이행 27. 관계 수급사의 위험성평가 이행관리와 환류활동을 이행 28.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향상 등에 개선 29. 위생상태 정기점검 절차 확보 등 보완 요구사항 개선 30. 단발성 공사에 대해 관계 수급회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

○ 안전성과

개선사항
1. 사고발생대책수립에 세부절차 수립 2. 교육계획은 수요조사 등을 기초로 한 수립 3. 보건분야 전문인력 보강 4. 효율적인 안전보건조직 운영을 위한 안전, 보건 전문인력 확보 5. 예산편성·책정 시 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용이 합리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 평가 및 환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체계로 보완 6. 현장검증 시 확인된 4가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 7. 안전점검의 날 활동 시 전사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기관')는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인 "KOBACO 임직원은 안전 보건 경영이 경영활동이 최우선가치임을 표명하고, 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고한 정착과 안전보건관리의 모든 활동에 역학과 책임을 다하는 것" 아래 안전 최우선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하고자 최고경영자가 자회사(코바코파트너스)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보건 실무 관련 회의와 성과를 위해서는 안전경영 노사의 정기적이고 다양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조직 문화를 위하여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아차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차사고 안전 신고 등에 대한 기여자 인센티브 등 제도 활성화에 보다 노력한다면 기관의 안전문화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현황조사와 원인분석, 안전보건 점검 및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직무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2021.06.07.)에 따른 안전보건전문인력(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등)의 보강이 조속하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직무제 운영 기본계획에 팀장급 및 팀원급 세부내용 중 산업안전기사 뿐만 아니라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등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 따라 공익 캠페인으로 감염병 코로나19 극복, 국민 생활안전 확산, 아동안전 캠페인, 노동자 인권보호, 환경안전 애착용기, 청소년 개인정보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의 안전보건경영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문

화 확산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과도 협업이 필요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안전보건 주제의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기관은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의지를 대내외 이해관계자 등에게 전파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안전보건경영체제 정착, 광고를 활용한 안전문화 조성과 확산, 안전보건법규 준수, 안전한 일터 조성 등)하였고, 최고경영자의 안전철학이 반영된 현장중심의 안전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책임 이행실적 보고 및 현장점검(2021.09.03.)을 수행하였다. 그 외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서버실 등 정보보완 제한구역 출입통제, 화재 및 전기시설 등 수시 안전점검 실시, 광고상담실 등에 방역관리 철저 등의 이행이 확인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경영 노사의 정기적이고 다양한 소통 노력과 아차사고와 안전 신고 등에 대한 기여자 인센티브 등 제도 활성화
2. 안전보건전문인력의 보강과 전문직무제 운영 기본계획에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최고경영자 아래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안전경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안전업무 총괄은 관리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부재한 상태이다. 사무직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위험 및 공무업무 등을 위탁 관리하는 자회사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한 인원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안전보건 업무를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더라도 안전보건 전담직원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총괄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최고경영자로 지정하지 않았고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안전경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안전관리 인력과 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대 및 자격요건 상향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경영책임 이행실적 등을 통하여 안전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나, 그 이행정도가 상시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안전경영위원회(위원장:전무이사), 안전보건관리단(안전보건관리단장)을 구성하였고, 프레스센터, 광고문화회관, 한국방송회관, 연수원에 안전보건담당을 배치하였다.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경영 심의기구로 원·하청 근로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기간 : 19.12.26.~22.12.28.) 인증 유지 심사(2021.12.27.~28.)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총괄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최고경영자 지정이 필요
2.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대 및 자격요건 상향이 필요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을 위하여 '21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안전예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예산을 항목별(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안전관리비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원 예산, 안전물품 및 장비구입비 등, 안전전담인력 인건비, 기타 등)로 수립하였다.

○ 기관의 예산편성에서 안전보건 전담인력, 위험설비 및 개·보수 예산이 감소되었고, 안전관련 전체 예산이 또한 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기관의 2021년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안전보건경영 예산 비율은 1% 수준이며, 안전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의 감소는 안전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안전보건 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향후 안전보건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기관의 예산 수립 내용에 있어 안전보건 예산 항목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집행율과 내실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예산의 적정한 집행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 기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개정('19.10.30. 제정, '20.08.26. 개정)하였고,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확보하고자 ISO45001 인증을 획득('19.12.26.)하여 매뉴얼(1종), 프로세스(10종), 절차서(5종) 및 지침서(10종)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의 사규관리규정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등재('21.12.01.)하였다.

○ 다만,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질병자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며, 기획재정부 지침 변경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 및 제출시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검토 및 최신화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관련 지침서에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안전조치 점검, 사내 차량 제한속도 기준, 휴일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작업 기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및 사후 조치 기준, 사무실 공기질 유지관리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서 등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주요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의 의지 및 실행방안이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난 평가에서의 보완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한 내용 추가와 지속적인 검토 및 최신화 유지
2. 안전관련 지침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유지.증진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3.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서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활용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전년도 사업추진성과 및 실적, 재해현황 및 사업수행 상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안전조직 구성, 안전관련 예산 편성, 안전관리 대상시설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였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부처에 제출하였다. 기관의 안전경영책임 목표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달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업장 안전분야 및 기타 안전분야 별 하위 추진활동을 설정하고, 안전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분기별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 다만, 기관은 당해 연도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인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관 내 모든 유해·위험정보를 담고 있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업무특성 상 재해발생 빈도 및 발생 시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기관의 안전경영책임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추진활동은 가급적 정량화하여 추진현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위원회가 분기별 실시되고 있으나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추진활동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판단하기 어려워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거나 안전경영위원회 상정안건에 안전경영책임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관의 경영평가(내부 KPI 설정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등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
2.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
3.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등에 제도적 개선

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자회사(3개 관리회사 및 4개 지사) 중 3개 관리회사(방송회관, 광고회관, 연수원)가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었고, '21년도 아차사고 신고제도 운영계획을 통해 우수사례를 심사하여 시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접수사례가 많고 그 내용이 다양하며 내방객(국민)까지 보호하기 위한 아차사고 또한 다수 발굴한 사례가 확인된다.

○ 기관은 위험성평가 회의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등을 교육하였으나 각 부서 구성원을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기 어려워 부서별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위험성평가를 안전보건관리단에서 일괄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각 부서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감소대책 수립 시행 결과 사진대지에서 부서별 사진이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류활동에 대한 효과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므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기관의 본사 위험성평가 결과를 순회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업1국에 세절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표상에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람하거나 전자게시판 등에 게시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관에서 발주한 단발성, 단기공사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수시평가) 이행점검은 물론 방송회관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수의 본사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수시평가)와 이행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이행점검 및 환류 활동에 개선이 요구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위험성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
2. 위험성평가 결과는 공람, 전자게시판 게시 등 공유
3. 시설개선공사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수시평가)와 이행점검 및 환류

【2】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자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감염병(COVID-19 포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종합건강진단 비용지원 실시)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사내 게시판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실시 독려를 1회만 실시하였으나 연중 실시를 목표로 분기 1회 이상 미실시자 파악 및 실시 독려가 필요하다. 기관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였고,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존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건강진단 결과 상담 가능 유자격자가 없어 '21년 11월과 12월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해 지원자에 한해 건강 상담을 진행하였다.

○ '21년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건강진단은 연 초에 실시계획을 알리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실시할 수 있도록 분기 또는 반기 등 주기적으로 실시결과를 확인하면서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지만 6월에 건강진단 실시계획을 세우는 등 다소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관리에 대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고, 건강이상소견자를 포함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련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최대 30%), 시차 출퇴근제 시행, 마스크 및 방역제품 구비, 사업장 환기 및 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택근무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20년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점을 개선해 매뉴얼을 개정('21.12.30.)하였고 기관 대표전화 등에 고객응대 보호 안내 조치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계약하였으나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에 사내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은 적극적 의미로서 근무환경 및 업무 특성이 반영되고, 구성원의 요구도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실행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추진할 조직과 업무분장, 예산 등이 필요하다. 기관은 건강증진 활동으로 '건강진단 비용지원'과 '단체보험 계약', 'EAP 상담서비스'를 계약해 실시하고, '사무환경 개선 사업(조도측정 및 교체)'도 진행했으나 근로자 복지로서 건강증진 업무를 분장하지 않아 소극적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업무특성 및 구성원 특성을 반영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건강관리 대상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은 연중 실시를 목표로 분기 1회 이상 미 실시자 파악 및 실시 독려
2. 건강진단 결과 관리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이상소견자를 포함한 사후관리 실시
3.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에 사내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개정하고 고객응대 보호 안내 조치는 실행이 필요
4. 업무특성 및 구성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과 실효성있는 운영 실시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전 직원 공통, 직무, 직급으로 구분하여 법정교육이 포함된 '21년 직원교육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시행하였고, '20년에 비해 임원진의 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부서별 교육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항으로 업종(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안전보건교육 의무에서는 제외되나 법정 교육시간의 1/2 정도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기관은 교육 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교육 결과 및 수요도 조사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수준은 우수하나, 산업보건분야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강화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은 '20년도에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를 받아들여 '21년도에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운영하였고, 총 39건의 아차사고 사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여한 37건에 대해 인센티브(기프티콘)를 부여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내 전자게시판에 공유하였다. 특히"광고도서관 유리벽 인식표시 설치, 방송회관 지하1층 전기차 충전소 차량 화재 및 인명피해 대비 소화기구 설치"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물론 국민보호를 위해 적절한 발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기관은 유해위험 작업 안전기준 관련 제4조 작업중지 조건에서 안전보건부문 관리자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관은 자사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에 대해 해당 기준을 전파,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교육 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교육 결과 및 수요도 조사 등의 반영
2. 산업보건분야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강화 노력
3. 작업중지 제도 정착을 위한 활성화 노력

【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사업시설별 재난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21년에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동 건물 타 입주사의 코로나19 감염을 사유로 협조가 되지 않아 문서교육 및 토론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비상대응 훈련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무재해 사업장으로 재난사고를 포함해 사고발생 보고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전파하였으나 재해조사 매뉴얼 중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비상대피 훈련 시행이 필요
2. 재해조사 매뉴얼의 산업재해에 대한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 보완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의 현장작동성 평가를 위해 한국광고문화회관(이하 현장)의 전기실, 기계실, 창고, 정압실, 고가수조 등을 확인하고 직원 면담을 실시하였다. 작업장의 통로는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조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옥상 건널다리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건널다리가 옥상에 비치되어 있어 적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유틸리티 시설의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모 착용에 대한 표지가 없거나, 음료수 병에 물질을 소분하여 보관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용접봉, 방수제, 백화제거제, 붕소산, 마그네슘 등)에 대한 MSDS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공단의 샘플을 비치한 경우가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 기관은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서'를 협력업체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안전보호구에 적용하고, 보호구 지급 대장 등의 서식을 포함하고 있다. 자회사인 코바코파트너스는 보호구함에 방독마스크, 장갑 등을 비치 및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호흡용 보호구인 방독마스크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필터를 모두 체결하여 지퍼백에 보관하고 있으며, 교체할 수 있는 여분의 정화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에서 사용되는 보호구는 검정대상 보호구만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부 보호구(청관제 등의 작업에서 활용하는 내화학성장갑)의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옥상 건널다리에 난간 설치

2. 유틸리티 시설의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모 착용 표지 게시
3. 음료수 병에 물질을 소분하여 보관할 때는 경고표지 부착
4.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MSDS 구비
5. 방독마스크는 개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교체할 수 있는 여분의 정화통 보유
6. 검정대상 보호구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2】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현장은 건물에 대한 관리를 자회사인 코바코파트너스에 위임하였고, 코바코파트너스는 장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방재, 전기, 기계설비를 관리하고 있다. 기관에서는 파트너스와 체결한 과업내용서에 관리대상 시설물 및 점검시기를 지정하고, 시설장비 법정검사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 다만, 시설관리 매뉴얼 없이 시설관리자가 점검일지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어 시설관리자 및 점검자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기계・기구・설비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표 및 점검 방법에 대한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의 회전부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나 현장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매일 자회사 직원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의 구동부가 노출된 채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건물 옥상 팬룸의 판넬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작업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폭 70cm 이상의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비치하여 근로자가 작업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관류보일러 판넬에 전기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 접촉을 예방하고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거나 단선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 물이 고여 있는 지하 5층 공조실 오수조 펌프에 접지가 실시되어 있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점검, 정비, 청소 등의 작업 시 불시전원 투입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시 전원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작업하고 있으나 시건장치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 추락·낙하재해는 매년 발생하는 사망재해 중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사람의 추락 또는 물체의 낙하에 의한 것으로써 위험구역에의 진입금지 조치를 비롯한 기본적 대책의 명확한 실시가 필요하다. 옥상의 피뢰침 설치부, 냉각탑 상층부, 안테나 설치부, 지하의 물탱크 상부는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7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다리식 통로는 등받이울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옥상 피뢰침 설치부의 사다리식 통로의 일부 발판이 탈락된 채로 있어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보수 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다리식 통로의 입구에는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기계.기구.설비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 및 점검 방법에 대한 매뉴얼 등의 제공
2. 엘리베이터의 구동부에 안전덮개 설치 필요
3. 건물 옥상 팬룸의 판넬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안전조치
4. 관류보일러 판넬 전기충전부에 절연 덮개 설치 필요
5. 지하 5층 공조실 오수조 펌프에 접지 필요
6. 점검, 정비, 청소 등의 작업 시 불시전원 투입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시건조치 필요
7. 옥상의 피뢰침 설치부, 냉각탑 상층부, 안테나 설치부, 지하의 물탱크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8. 사다리식 통로의 입구에는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설치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신기술의 개발·도입, 신물질의 사용에 의한 새로운 종류의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물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고 재해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소방계획서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 방화구획도, 소방설비의 점검, 피난계획을 확인하였으며, 밸브 등의 꼬리표, 개폐방향 표시대책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험방지조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종 배관의 누수 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 다만, 보일러 및 스팀헤더의 지시압력계에 정상운전시의 운전 지시값과 최대 및 최소값을 표시해 두고 지시값이 정상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장의 자재창고 등을 확인한 결과, 신너, 페인트, 경화제 등 유기용제를 지하 창고의 캐비넷과 선반에 개방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유증기가 캐비넷 내부에 체류하는 등 안전 및 근로자 건강관리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외 별도의 공간에 분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LPG, 고압산소용기가 환기가 불충분한 창고에 전도방지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장에서는 관리대상물질인 신나(톨루엔), 락카(부틸셀로솔브 등), 용접봉(망간, 니켈불용성화합물, 철), 우레탄페인트(톨루엔, 크실렌, 이산화티타늄, 에틸벤젠)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관리대상물질(스토다드솔벤트, 이산화납, 용접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에의 영향은 폭발·화재에 의한 상해뿐만 아니라, 중

대한 건강장해의 문제도 있으므로 위험성평가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성의 표시 등이 필요하다.

○ 작업장의 바닥, 부식방지조치는 적절하나, 화학물질의 저장장소가 일정치 않고, 사용 중인 페인트 등 화학물질용기가 개방된 채 산재되어 보관되어 있으며 경화제 등이 소분된 용기는 별도의 표시가 없이 보관·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대상물질 취급장소에 명칭 등을 게시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취급일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질식재해는 치명률이 대단이 높지만,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구출을 위해 들어간 사람을 포함하여 다수가 재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그 위험성을 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알리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밀폐공간작업과 관련하여 전사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는 개정(2021.06.01.) 되었으나, 현장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기장치(송풍기), 응급구조장비(중량물 인양장치), 공기호흡기 등을 구비하고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한 점을 확인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있는 정화조실, 소화약제실은 밀폐공간 표지부착이 미흡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아울러, 질식위험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허가서 체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2차 수급인의 작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1차 수급인이 확인하는 절차는 있으나, 관계수급인의 작업계획을 도급인(기관)이 검토하여 허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 시설의 관리책임인 기관이 직접 작업계획 및 작업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허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할 점 요약】

1. 보일러 및 스팀헤더의 지시압력계에 정상운전시의 운전 지시값과 최대 및 최소값 표시
2. 신너, 페인트, 경화제 등 유기용제를 지하창고의 캐비넷과 선반에 개방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음으로 실외 별도의 공간에 분리 보관
3. LPG, 고압산소용기가 환기가 불충분한 창고에 전도방지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장소에 보관
4. 소분된 용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5. 관리대상물질 취급장소에 명칭 등의 게시

6. 특별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취급일지의 작성.관리가 필요
7. 현장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립
8. 정화조실, 소화약제실에 밀폐공간 표지부착
9.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인 기관이 직접 작업계획 및 작업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허가할 수 있는 조치 필요

【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은 안전작업허가 지침서(KOBACO-45001-WI001)를 작성하였으며 화기작업, 일반위험작업 및 보충적인 작업(밀폐, 정전, 굴착, 고소, 중장비)으로 안전작업 허가대상을 분류하고 허가절차에 신청, 검토, 승인부서를 명시하였다.

○ 다만, 현장은 2인 1조 작업, 취약계층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및 작업허가 기한, 안전관리부서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해당 지침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제도 운영에 있어서 수급업체에서 공사허가 신청서를 작성·보유하고 있고, 작업전·후 수급업체의 보고서를 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어 안전작업허가 지침과 그 운영이 상이하고, 운영 중인 안전작업허가제도가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작업중지요청제와 관련하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작업중지)에 근로자 작업중지권(작업중지 요청)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기관의 현장 내 3개소에 작업중지 요청제와 관련한 홍보물(X-배너)을 설치하였으나, 본사 전화번호 외 현장의 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작업허가제도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2. 작업중지요청제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음의 명시 필요

【5】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목표제를 수립·시행하여 관계수급회사는 물론 시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자회사 중 시설관리 상시수급회사의 근로자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급업체 평가기준표를 활용하여 적격수급업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과정에서 적격수급업체 선정에 활용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수급업체 평가기준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 시 환류활동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수급업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발주한 방송회관 옥탑층 승강기 기계실 환경개선공사(석면작업), 연수원 대운동장 전광판 설치공사, 난방용 1호기 팬코일 유닛 열교환기 교체 공사에 대해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결과 및 환류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관계수급회사의 위험성평가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절한 환류활동을 통해 관계수급회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물탱크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기관은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을 감리사에 제공하고 도급공사 안전활동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것이 확인되나 방송회관 옥탑층 승강기 기계실 환경개선공사는 석면해체공사임에도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대책 검토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사다리 작업안전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점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향상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기관은 서울신문사와 본사 사옥 지분의 50%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건물의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 평가기간 중 사옥 내 출입이 불가한 시설이 옥상 등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관계수급회

사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제공에 불리한 여건으로 판단되며, 사옥관리에 따른 관계수급인 보호를 위해 기관의 변화된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본사 위생시설 확인결과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계수급인이 샤워 및 세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지난 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위생상태 정기점검 절차 확보)

○ 또한, 기관은 '옥탑층 승강기 기계실 환경개선 공사(석면해체)'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석면해체공사의 위험성 및 대책을 제시하는 안전보건자료를 공문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보건조치는 감리에게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타 단발성 공사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이 거의 없어, 관계수급회사에 대한 기관의 확대된 역할과 책임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할 점 요약】

1.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수급업체 평가기준표 활용과 환류활동을 이행
2. 관계수급회사의 위험성평가 이행관리와 환류활동을 이행
3.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향상 등에 개선
4. 위생상태 정기점검 절차 확보 등 보완 요구사항 개선
5. 단발성 공사에 대해 관계 수급회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1】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조치사항 이력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과제 이행 심사>

○ 기관은 총 19건의 개선권고 과제 전부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었다. 기관 담당자는 해당 과제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사에 전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개선과제 이행 노력>

○ '20년 개선 요구된 19건에 대해 전체 개선 완료하였으나, 일부 시행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되었다.

○ ISO 45001인증규격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사고발생대책수립)에 따라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되어 있고 아차사고 발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수립되지 않았음으로 세부절차 수립이 요구된다.

○ 교육계획은 수요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나, 수요조사 등이 반영되어 수립되지 않았음으로 수요조사 등을 반영한 '22년 교육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현재는 보건업무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22년에 보건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 수립 되어 있음으로 계획에 따른 보강이 요구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사고발생대책수립에 세부절차 수립
2. 교육계획은 수요조사 등을 기초로 한 수립
3. 보건분야 전문인력 보강

【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 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한국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안전관리 대상 작업장은 방송회관, 광고문화회관, 한국 프레스센터, kobaco연수원이 있다. 안전조직은 최고경영자인 사장 아래 경영전략본부장, 광고진흥본부장 ,혁신성장본부장, 광고영업본부장 등을 두고 있다.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본 심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검증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방송회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안전활동 추진 활동·실적의 적정성>

○ 기관은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안전보건경영이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이 핵심적인 경영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21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목표제를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유해·위험요인분석 및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 및 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CEO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교육을 수료하였고, 공생협력의 일환으로 자회사 사업장 무재해 성과목표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활동으로 전략경영회의 12회와 현장안전 점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안전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기관의 안전인력은 산업안전기사 1명, 소방설비 기사 2명, 소방설비 산업기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년도 신규 채용한 안전전담인력이 이직함으로서 안전전담인력이 취약한 구조이다. 현재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22년에 보건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향후 안전만이 아니라 보건 전문인력까지 확대하여 안전조직을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 기관은 아차사고 발굴을 위한 아차사고 신고제도 활성화하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차사고 신고건수 총 40건(공사 19건, 자회사 21건)의 전 항목을 조치 완료하였고 우수사례 2건을 포상하였다. 또한 실국별 세분화를 통해 위험성 평가대상을 확대하였고 방송회관의 '20년 최초 인정 후 광고회관, 연수원은 '21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취득하였다. 밀폐공간작업지침 제정, 유해위험작업 안전기준, 안전작업 허가지침서, 위험작업 안전관리 지침서 등을 개정하고 유해·위험작업별 표준 안전지침을 현행화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 내용은 바람직하다.

○ 기관은 CEO 주도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관리 예산을 편성·검토하고, 안전투자예산 집행율 제고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안전보건 예산계획 및 집행에서 현재보다 선명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책정 시 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용이 합리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 평가 및 환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체계로 보완이 필요하다.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 기관은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 표명으로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 강화하고자,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공표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목표제를 시행하고 안전경영위원회, 전략경영회의 등 예방목표 실적 점검을 하고 있다. CEO와 전무이사, 광고진흥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개소 발굴 및 근로환경 지속적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기관의 전년도 주무 부처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없었으며, 전년도 안전관리등급제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전체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성과측정을 통해 안전보건활동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목표설정의 적정성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한 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안전등급제에서는 3등급을 받는 등 양호

한 성적을 보여줬다.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관리, 전기·소방 등 작업 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수립하도록 개선 요구되어 의료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건강(보건)관리 상담서비스 실시와 전기 소방 작업 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수립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임원의 안전경영회의 및 현장 안전점검 직접 참여가 확대되었고, 성과달성 모니터링 및 경영자 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바람직하다.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 기관의 업(業)특성을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활용한 공공 안전가치를 확산하고자,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국민의 노력들을 격려하고 백신 접종 동참을 독려하는 코로나19 극복 「최고의 씬」을 제작하여 전국민 대상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TV·라디오 연간 6.5만 회 송출과 유튜브 690만 회 조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배달노동자와 이용자의 상호배려로 안전한 배달 문화를 확산하고자, 배달노동자와 이용자 간 상호이해를 위해 각각의 관점에서 “무거운 택배 재촉이, 무시가, 요구가 짐이 됩니다”와 “불편한 택배 안전도, 질서도, 신뢰도 함께 배송해주세요”라는 광고를 송출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실천의식 제고를 위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캠페인을 통해 9만여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달성하였고,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개선 「굿 라이더」캠페인을 통해 전국 4,800개 매체에 캠페인을 노출하는 등 안전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타사항>

○ 한국방송회관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현장 검증 실시 결과 다양한 안전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일부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경유 공급배관에 흐름방향과 밸브의 열림/닫힘 표시가 되지 않았음으로 흐름방향과 밸브의 개폐방향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 A형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예정이라고 하나, 기계실에 보관되어

있음으로 폐기하시기 바란다.

○ 기계실에 설치된 물저장조와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의 수직사다리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아 떨어짐 위험이 있음으로 방호조치가 요구된다.

○ 기계실에 철거된 수처리실 통로 주변에 덮개판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음으로 방책설치하여 접근 금지시키거나, 덮개판을 교체하여 개구부 방화조치가 요구된다.

기관의 안전활동 추진내용, 외부평가기관의 안전평가 결과,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장검증 결과 미흡한 사항이 일부 발견되어 향후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조직의 안전보건 경영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심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자 관점의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효율적인 안전보건조직 운영을 위한 안전, 보건 전문인력 확보
2. 예산편성·책정 시 안전보건 예산 편성 내용이 합리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 평가 및 환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체계로 보완
3. 현장검증 시 확인된 4가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

【3】 안전문화 확산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가치가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21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따라 아차사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였으며, '21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월별 테마를 선정하여 본사 및 사업소(광고회관, 방송회관, 연수원) 등에서 안전점검의 날 활동을 수행하였다. 아차사고 사례 발굴 및 안전점검의 날 활동은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기관의 업무특성을 활용하여 이륜차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굿라이더 캠페인, 배달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상호배려와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캠페인 및 감염병 대응지원 활동 등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여가 확인된다.

○ 다만, 기관은 안전점검의 날 활동 시 Top-Down 방식의 전사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공익광고의 경우 기관 주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특성화된 컨텐츠로 기관이 보유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점검의 날 활동 시 전사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

【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직영·수급업체·건설발주현장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감소 성과>

○ 기관은 2021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노력>

○ 해당 없음